

## 항공기상청 위임 · 전결 규정

제정 2000. 9. 1. 항공기상대훈령 제1호  
일부개정 2002. 8. 8. 항공기상대훈령 제7호  
일부개정 2005. 10. 6. 항공기상대훈령 제15호  
개정 2007. 5. 4.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1호  
(항공기상관리본부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개정 2007. 6. 18. 항공기상관리본부훈령 제23호  
일부개정 2008. 3. 31. 항공기상청훈령 제26호  
일부개정 2014. 2. 25. 항공기상청훈령 제43호  
(항공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16. 4. 26. 항공기상청훈령 제52호  
일부개정 2020. 9. 1. 항공기상청훈령 제71호  
일부개정 2020. 12. 31. 항공기상청훈령 제73호  
일부개정 2022. 7. 26. 항공기상청훈령 제79호  
일부개정 2024. 4. 12. 항공기상청훈령 제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적용)** 항공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대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대의 장을 말한다.
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

5. “예보관”이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5급 사무관 또는 전문관을 말한다.
6. “팀장”이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에 따라 각 부서별 하위조직으로 구성한 팀의 선임자(사무관)를 말한다.
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
8. “부서”란 기획운영과·예보과·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말한다.
9.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10.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위임사항)** 과장·대장·실장·예보관·팀장 및 담당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대장, 실장, 예보관,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

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 또는 소속 기상대장 및 기상실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1호, 2000.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7호, 2002. 8.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15호, 2005. 10.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21호, 2007.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23호, 2007. 6.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26호, 2008. 3.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43호, 2014.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52호, 2016. 4.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71호, 2020. 9.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73호, 2020. 12. 31.>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79호, 2022. 7.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항공기상청훈령 제84호, 2024. 4.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